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서욱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병역법」 제79조의2(적금의 정부지원)를 근거로 하는 병 내일준비지원 세부사업인 3:1매칭지원금(사회복귀준비금) 제도가 '21년 한국형 뉴딜 2.0 발표에 따라 신설됨에 따라 ‘장병내일준비적금’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 158조의2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3:1 매칭지원금(사회복귀준비금)의 정부 재정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적금의 정부지원 3:1매칭지원금(사회복귀준비금) 세부사항 신설 (안 제158조의2제1항제2호)

1)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3:1 매칭지원금(사회복귀준비금)을 납입원금에 해당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에서 정하는 이자소득 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퍼센트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.

4. 주요토의과제 : 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8조의2(적금의 정부지원)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(이하 “장병내일준비적금”이라 한다)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(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5제4항에 따라 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을 해당 적금의 만기일로 본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1퍼센트 이자지원금”이라 한다)
2.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원금에 해당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에서 정하는 이자소득 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퍼센트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(이하 이 조에서 “3:1매칭지원금(사회복귀준비금)”이라 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금의 정부지원 적용례)

- ① 1퍼센트 이자지원금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적용하며 최초가입일부터 지원한다.
- ② 3:1매칭지원금(사회복귀준비금)은 2022년 1월 납입하는 금액부터 지원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58조의2(적금의 정부지원) ①		제158조의2(적금의 정부지원) ①		
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「조		-----		
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9에		-----		
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(이하		-----		
“장병내일준비적금”이라 한다)		-----		
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		-----		
재정지원금은 <u>입금액마다 입금</u>		----- 다음 각 호와 같다.		
<u>일부터 만기일(장병내일준비적</u>		1.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		
<u>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</u>		일(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		
<u>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같은</u>		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		
<u>법 시행령 제93조의5제4항에 따</u>		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		
<u>라 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</u>		93조의5제4항에 따라 법에 따른		
<u>을 해당 적금의 만기일로 본다.</u>		복무기간 종료일을 해당 적금의		
<u>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전일까지</u>		만기일로 본다. 이하 이 조에서		
<u>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퍼센트의</u>		같다)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		
<u>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</u>		여 연 1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		
<u>금액으로 한다.</u>		이자를 합산한 금액(이하 이 조		
		에서 “1퍼센트 이자지원금”이라		
		한다)		
		2.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원금		
		에 해당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		
		사 등에서 정하는 이자소득 과		
		정부에서 지원하는 1퍼센트 이		
		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퍼		
		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(이하 이		

② ~ ④ (생략)	조에서 “3:1매칭지원금(사회복지준비금)”이라 한다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복지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6611